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20호

『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3월 10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폐기물 감량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 폐지 및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(안 제5조)

나.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의 10% 범위 내에게 감면 또는 증액 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14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3. 16.(목)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5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붙임자료

가.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의 10% 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 (관리·운영등) ① (생략)	제5조 (관리·운영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시행령」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	2.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
3. ~ 6. (생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 (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) ① (생략)	제14조 (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(생 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
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
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
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
의 10% 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
증액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폐기물관리법」 ○ 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①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○ 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)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(이하“반입수수료”라 한다)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경정하여야 한다.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,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군·구 등 폐기물 감량 또는 목표반입량 초과반입시 반입수수료에 대한 일부 감면 및 증액부과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각 군·구 등의 폐기물 감량 노력 여부 및 반입수수료의 증액 부과 정도에 따라 비용발생이 유동적이므로,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한 사항임.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방극호